

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[노인공익활동사업] 참여자 모집 공고

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
2026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(노인공익활동사업)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
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28일

(사)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장

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(노인공익활동사업)
 - 활동조건 : 월30시간(일 3시간) 참여 시 29만원 지급, 상해보험 가입
 - 활동기간 : 2026. 1. 2 ~ 11. 30(11개월)
 - 사업내용 : 경로당깔끄미
- ※ 세부사항은 모집 분야 참고

2. 모집개요

- 공고기간 : 2025. 11. 28.(금) ~ 2025. 12. 26.(금)
 - 접수기간 : 2025. 12. 3.(수) ~ 2025. 12. 24.(수)
 - 접수처 : 대한노인회예천군지회, 면 분회경로당
 - 접수방법 : 기관방문 및 면 분회경로당 또는 온라인 신청
- 대한노인회(☎054-652-1421) : 해당기관 방문접수(예천읍 충효로 209-22)

	지역	경로당(수)	접수일자(장소)	비고
1	은풍면	25	12. 3(수) 다솜회관 10시~14시 접수	지정 접수일에 미접수 시 12. 18(목) ~ 12. 24(수) 신청 (대한노인회방문) ※12. 3(수) ~ 12. 24(수) 22일간 접수 가능
2	효자면	13	12. 3(수) 다솜회관 10시~14시 접수	
3	용궁면	22	12. 4(목) 용궁면경로당 10시~14시 접수	
4	지보면	40	12. 5(금)	
5	개포면	20	12. 8(월)	
6	감천면	35	12. 9(화)	
7	풍양면	39	12. 10(수) 풍양면경로당 10시~14시 접수	
8	용문면	32	12. 11(목) 용문면경로당 10시~14시 접수	
9	유천면	33	12. 12(금) 유천면복지회관 10시~14시 접수	
10	보문면	30	12. 15(월)	
11	호명읍	44	12. 16(화)	
12	예천읍	45	12. 17(수)	
	합계	378		

- **온라인신청** : www.seniorro.or.kr(노인일자리여기)

※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 후 활동역량 확인을 위해 접수기간 종료일(12.27.)까지 기관에 방문하여야 하며 미방문 시 탈락 처리함

○ 구비서류 : 노인공익활동서비스신청서, 신분증(본인확인), 통장사본 1부
주민등록등본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

3. 참여요건

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*(배우자포함)로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
*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

*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-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

○ **참여제외자 :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불가**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(1~5등급)
- *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‘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’ 첨부 시 참여 허용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
4. 모집분야 및 인원

○ 모집분야 :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(노인공익활동사업) 참여자

○ 모집인원 : 380명

(단위 : 명)

수행기관	사업단명	활동장소	인원	비고
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	소계		380	
	경로당갈고미	예천읍, 호명읍, 개포면, 용궁면, 지보면, 감천면, 유천면, 용문면,보문면, 은풍면, 풍양면, 효자면 12개 읍.면	380	각 경로당 참여자 1명 선발

※ 예산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될 수 있음

5. 참여자 선발

○ 각 경로당 추천 참여자 1명 선발

6. 최종선발자 통보 : 2026. 1월 초 개별 통보

7. 유의사항

-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내용 중 선발 이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.
-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,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신청자에게 있음.
-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(수요처의 장, 수요처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 직원,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확인하는 자)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
- 참여자 선발 후 참여 제외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제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함.

- 참여자가 공익 활동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(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 등이 품위손상, 기타 수사기관에 의뢰된 범죄 사건·사고 포함), 타인에게 폭언·폭행을 하는 등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질병·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.
- 참여자 선발 후 활동 중 부적격 참여자로 확인될 시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가 제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, 만약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참여 금지 조치함. 또 이후 참여 시 2년간 적격 여부 중점 관리함.